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별지 서식 등 기재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단순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개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서식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근로형태를 명시하고 신청인이 이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

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서식 개정 (안 제11조 제2항, 안 별지 제9호서식)

서식 기재사항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별도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다.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서식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

라. 근로자 명부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6호서식)

서식을 법령상 기재사항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를 “신청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신청 내용의 근로형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 내용	㉑근로형태	감시적 근로종사자	1.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내 [] 2. 격일제(24시간 교대) []
		단속적 근로종사자	1. 1일 실 근로시간 8시간 이내 [] 2. 격일제(24시간 교대) []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사용자란의 “15세 미만인 자의 종사업무”를 “15세 미만인 자의 직종”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취직인허 신청 등) ① (생략)	제11조(취직인허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u>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u>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u>신청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근로자수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신청 내용	⑧종사업무		
	⑨근로자수	감시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⑩근로형태	감시적 근로종사자	1.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내 [] 2. 격일제(24시간 교대) []
		단속적 근로종사자	1. 1일 실 근로시간 8시간 이내 [] 2. 격일제(24시간 교대)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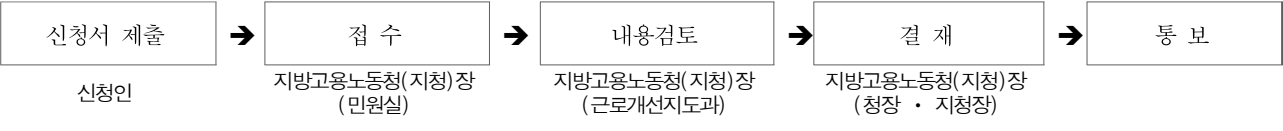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교부 ☐ 재교부

신청서 ☐ 신청서 및 사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15세 미만인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사용자가 될 자)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의 직종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학교장	학교명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수업시간	
	의견	(서명 또는 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와의 관계	동의여부 (서명 또는 인)

재교부 신청 사유	☐ 사용불가, ☐ 분실, ☐ 기타 ()		
--------------	---	--	--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 ☐ 교부, ☐ 재교부 }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사용자가 될 자) (서명 또는 인)

15세 미만인 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15세 미만인 자의 **직종**”란에 15세 미만인 자를 둘 이상의 **직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직종을 모두 적으시기 바라며, 이 중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장”란은 15세 미만인 자가 의무교육대상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재교부의 경우 작성할 필요 없음)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용자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의 직종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학교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5세 미만인 자의 사용을 인허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근로자 명부					
성명(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종사업무					
고용	고용일 (갱신일)	년 월 일 (년 월 일)	퇴직	퇴직일 (해고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유	
이력	경력				
	기타 사항	(필요시 학력, 병역, 기능·자격, 교육 등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연 락 처	(044) 202 - 7544, 7555, 7983